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5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임미애 · 한민수
김교홍 · 박홍근 · 권향엽
김재원 · 박해철 · 소병훈
최혁진 · 이주희 · 윤종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, 사업정지,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,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·시설의 명칭, 처분사유, 처분내용 등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법인·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·불법행위·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·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·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·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,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행정청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인 법인·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.

이에 법인·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·불법행위·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·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,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·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6항 삭제 및 제51조의2 신설).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2(행정처분 등의 공표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1조에 따라 지도·감독·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, 처분사유,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제26조제1항제6호·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‘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·불법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, 처분사유,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·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

다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1조(지도·감독 등) ① ~ ⑤ (생략) ⑥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 도·감독·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 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, 처분사유,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할 수 있다. ⑦ (생략) 〈신설〉	제51조(지도·감독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〈삭제〉 ⑦ (현행과 같음) 제51조의2(행정처분 등의 공표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51조에 따라 지도·감독·회계 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, 처분사유,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 보를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제

26조제1항제6호·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‘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·불법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, 처분사유,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·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